# 2022년도 1차 정기(결산)이사회 결과보고

## 1 회의 개요

① 일　　시 : 2022년 3월 29일(화) 10시 30분 ~ 12시 30분
② 장　　소 : 올림픽테니스장 2층 대회의실
③ 출석임원 : 재적이사 30명중 19명 참석
　　ㅇ 회　　장 : 김돈순
　　ㅇ 수석부회장 : 소영선
　　ㅇ 부 회 장 : 정종흠, 정해천, 현문식
　　ㅇ 사 무 총 장 : 이성진(사회자)
　　ㅇ 이　　사 : 강동영, 김술현, 김태주, 나근주, 박철성, 박태웅 양구석, 오주옥, 유경민, 이경호, 장승종, 최용운 함세희
　　ㅇ 자 문 위 원 : 전영석
④ 상정안건
　ㅇ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코로나19 위로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3. 경기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재개 보고
　　4. 임원 사임 보고
　ㅇ 심의사항
　　1.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2.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의건
　　3.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4.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
　　5. 임원 선출 규정 관련 논의

## 2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0시 30분)

□ 김돈순 회장 인사말씀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코로나19 위로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3. 경기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재개 보고
4. 임원 사임 보고

① 주요내용

**1. 전차회의록 보고**

**2. 코로나19 위로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경기단체연합회 코로나19 위로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가. 지급대상 : 경기단체연합회 회원(2021년도 회비 미납제외)

나. 지급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 2021년 12월 31일(금)

다. 지급금액 : 1인당 현금 100,000원 / 계좌이체

라. 지출예산 : 62단체 468명, 46,800,000원

○ 단체별 세부내역

- 484명 중 468명(1차 289, 2차 88, 3차 91)

| 연번 | 단체명 | 회원 | 1차 | 2차 | 3차 | 계 | 연번 | 단체명 | 회원 | 1차 | 2차 | 3차 | 계 | 연번 | 단체명 | 회원 | 1차 | 2차 | 3차 | 계 |
|---|---|---|---|---|---|---|---|---|---|---|---|---|---|---|---|---|---|---|---|---|
| 1 | 검도 | 8 | 8 | | | 8 | 22 | 빙상 | 16 | | 1 | | 1 | 43 | 줄넘기 | 5 | | | 5 | 5 |
| 2 | 게이트볼 | 6 | 6 | | | 6 | 23 | 사격 | 10 | 10 | | | 10 | 44 | 족구 | 4 | 4 | | | 4 |
| 3 | 골프 | 17 | 17 | | | 17 | 24 | 산악 | 12 | | | 12 | 12 | 45 | 철인3종 | 9 | 9 | | | 9 |
| 4 | 국학기공 | 5 | | 5 | | 5 | 25 | 세팍타크로 | 4 | 4 | | | 4 | 46 | 체조 | 9 | | 9 | | 9 |
| 5 | 궁도 | 5 | 5 | | | 5 | 26 | 소프트테니스 | 8 | | 8 | | 8 | 47 | 카누 | 7 | 7 | | | 7 |
| 6 | 근대5종 | 13 | | 13 | | 13 | 27 | 수상스키 | 6 | | | 6 | 6 | 48 | 탁구 | 13 | 13 | | | 13 |
| 7 | 농구 | 10 | | 10 | | 10 | 28 | 수영 | 11 | | | 11 | 11 | 49 | 태권도 | 18 | 18 | | | 18 |
| 8 | 당구 | 9 | | 9 | | 9 | 29 | 수중핀수영 | 12 | | | 12 | 12 | 50 | 택견 | 7 | 7 | | | 7 |
| 9 | 댄스스포츠 | 5 | 5 | | | 5 | 30 | 스쿼시 | 6 | 6 | | | 6 | 51 | 테니스 | 9 | | | 9 | 9 |
| 10 | 럭비 | 7 | 7 | | | 7 | 31 | 승마 | 7 | 7 | | | 7 | 52 | 파크골프 | 5 | | 5 | | 5 |
| 11 | 레슬링 | 7 | 7 | | | 7 | 32 | 씨름 | 11 | | | 11 | 11 | 53 | 패러글라이딩 | 4 | | | 4 | 4 |
| 12 | 롤러 | 7 | 7 | | | 7 | 33 | 아이스하키 | 7 | 7 | | | 7 | 54 | 펜싱 | 10 | 10 | | | 10 |
| 13 | 루지 | 4 | | 4 | | 4 | 34 | 야구 | 18 | 18 | | | 18 | 55 | 하키 | 6 | | 6 | | 6 |
| 14 | 바둑 | 7 | 7 | | | 7 | 35 | 양궁 | 11 | 11 | | | 11 | 56 | 합기도 | 6 | 6 | | | 6 |
| 15 | 바이애슬론 | 7 | 7 | | | 7 | 36 | 역도 | 5 | | | 5 | 5 | 57 | 핸드볼 | 11 | | 11 | | 11 |
| 16 | 배구 | 10 | | | 10 | 10 | 37 | 요트 | 7 | 7 | | | 7 | 58 | 주짓수 | 4 | 4 | | | 4 |
| 17 | 배드민턴 | 13 | 13 | | | 13 | 38 | 우슈 | 6 | 6 | | | 6 | 59 | 카바디 | 1 | | | | 0 |
| 18 | 보디빌딩 | 6 | 6 | | | 6 | 39 | 유도 | 5 | 5 | | | 5 | 60 | 카라테 | 2 | | | 2 | 2 |
| 19 | 복싱 | 5 | 5 | | | 5 | 40 | 육상 | 7 | 7 | | | 7 | 61 | 킥복싱 | 3 | | | 3 | 3 |
| 20 | 볼링 | 8 | 8 | | | 8 | 41 | 자전거 | 8 | 8 | | | 8 | 62 | 요가 | 1 | | | 1 | 1 |
| 21 | 봅슬레이 | 5 | 5 | | | 5 | 42 | 조정 | 7 | | 7 | | 7 | 63 | 연합회 | 2 | 2 | | | 2 |

### 3. 경기단체연합회 홈페이지 재개 보고

ㅇ 주요사항

-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링크
- 테니스장 2층 대회의실 회의예약 시스템 개설

**※ 차후 올림픽공원 내 회의실 추가예정**

- 올림픽공원 내 회의실 현황 및 예약방법 안내 및 공지
- MOU등 경기단체연합회 회원을 위한 공지
- 경기단체연합회 경조사 공지
- 경기단체연합회 주요 회의, 행사 안내 및 결과보고 공지
- 종목단체 별 홍보 게시판(사업, 행사) 등 게시판 신설

### 4. 임원 사임 보고

ㅇ 사임 임원 명단(2명)

| 구 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비 고 |
|---|---|---|---|
| 이 사 | 김 일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문위원 | 정년퇴직 22.2.28. |
| 이 사 | 정 춘 교 |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부장 | 퇴사 22.2.28. |

**② 참석임원 주요 발언: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접수**

## □ 심의사항

### 1. 규약 및 규정 제·개정(안)

**① 주요내용**

<1>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개정(안)

ㅇ (제2조) 목 적 조항 신설 【자체 정비사항】

- (제2조 개정 및 신설) 연합회의 목적 구분과 가입단체의 정체성 구분

ㅇ (제11~13조) 선임·선출 임원에 대한 구분 규정 개선【자체 정비사항】

- (제11조 1 신설) 궐위 관련 조항 신설
- (제12조 개정) 임원 선출방법 조항 분리
- (제13조 신설) 임원 선임방법 조항 분리

ㅇ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규정 개선【자체 정비사항】

- (제22조 5 신설) 규정 제·개정 조항 신설

- (제22조 7 신설) 상조회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ㅇ (제33조 2, 제 11장) 규약 내 금액 명기 부분 회비 규정 신설로 인한 삭제 【자체 정비사항】

- (제33조 2 개정) 월회비 금액에 관한 조항 회비 규정으로 이동
- (제11장 삭제) 상조회 운영 규정 회비 규정으로 이동

ㅇ (제36조) 사무처 복무규정 개정【자체 정비사항】

- (제36조 개정) 사무처 규정 개정으로 규정 간소화

ㅇ (별표1) 업무추진비 기준표 사무처 규정으로 이동으로 인한 삭제【자체 정비사항】

- (별표 1 삭제) 사무처 규정 개정으로 규정 이동

<2> 사무처 처무 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제7조) 사무처 직제관련 규정 개선 【자체 정비사항】

- (제7조 개정) 직원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 개정
- (제7조 1 신설) 직원 고가평가직원 규정 신설

ㅇ (제13조) 전결사항 및 분장업부 규정 개선【자체 정비사항】

- (제13조 1항 신설) 위임전결사항 조항 신설
- (제13조 2항 신설) 임원의 임기 중 선출임원 결원에 대한 조항 신설

ㅇ (제31조) 호봉제 운영에 대한 규정 정비【자체 정비사항】

- (제31조) 호봉제에 대한 조항 신설

ㅇ (제32조) 급여기준 조항 신설 및 자구수정【자체 정비사항】

- (제32조 1항 신설) 급여기준 조항 신설
- (제32조 2항 개정) 자구 수정

ㅇ (제34~40조) 사무처 보수관련 규정 정비【자체 정비사항】

- (제34조 신설) 사무처 직원 기본 급여 조항 신설
- (제35~39조 신설) 사무처 직원 상여금, 교통비, 명절휴가비 조항 신설
- (제40조 신설) 임원 보수 및 업무활동비 신설

ㅇ (별표 제1~5호) 사무처 규정 관련 기준표 정비 【자체 정비사항】

- (별표 1 신설) 경력환산기준 신설
- (별표 2 신설) 호봉책정기준 및 승진연한기준 신설
- (별표 3 신설) 급여 지급 기준 신설
- (별표 4 신설) 수당 지급 기준 신설
- (별표 5 신설) 인사고과평가 기준 신설

<3> 회비 규정 제정 주요내용

ㅇ (제6조) 회비 부과 기준 관련 규정 정비 【자체 정비사항】

- (제6조) 회비 부과 기준 규정 명기(규약에서 이동)

ㅇ (제12조) 상조회 운영 규정 정비【자체 정비사항】

- (제12조) 상조회 운영 규정 명기(규약에서 이동)

ㅇ (별표 1호, 2호) 2023’ 상조비 지급 금액 및 회비 인상【자체 정비사항】

- (별표 1호, 2호) 회비 부과기준 및 상조비 기준표 신설

② 참석자 주요발언

ㅇ 회장: 제1호 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ㅇㅇㅇ 이사: 심의사항 5안에 임원 선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되고 난후 규정 개정안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제 5안에서 지금 이랑 다르게 바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심의 의결한 1안 규약 개정안도 또 바뀌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ㅇ 회장: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ㅇㅇㅇ 이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규정 심의 때문에 논의를 했었을 때 제 12조를 보시면 회장/사무총장/감사는 총회 선출하되라는 큰 전제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어쨌든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기본인데 다만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회장 선출 규정을 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여기 방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경기단체연합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연 이 회장 선거를 하는 게 우리 경기단체연합회의 통합이나 이런 취지에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안건을 먼저 다루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전에 해당 조항만 좀 뒤쪽으로 넘기되 다른 부분들을 먼저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장님께서 규정 개정 때문에 당부를 해 주신 거는 저희가 어쨌건 연합회라는 게 친목을 도모는 하지만 좀 조직이 많이 비대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조직적으로 규약에서 더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리고 조직화될 거는 조직화하자라는 그런 기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도 같이 한 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 회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안건 상정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승인을 원안대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하되 그 임원 개선 건에 대한 부분만 5안에 결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ㅇ 임원 : 네 동의합니다.

ㅇ 회장: 이의 사항이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안건 5안에 따라서 재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승인합니다. (의사봉 3타)

③ 논의결론: 원안의결

## 2.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의건

### ① 주요내용

ㅇ 2021년도 주요 사업결과 및 회계 결산 보고

<1> 사업결과 - 주요 내용 : 하단 참조

1. 경기단체연합회 회원 복지향상

1 워크숍 대체 소통강화 행사

ㅇ 일　　시 : 2021년 7월 22일(목) ~ 30일(금)
ㅇ 지급단체 : 대한검도회 외 66단체
ㅇ 대　　상 : 각 종목단체 상근근무자(임·직원)
ㅇ 지급장소 : 올림픽공원 내 남2문 B구역 p1주차장
ㅇ 지급품목 : 현금 593만원(593 x 1만원), 쿠폰 593장(593명 x 1장),
링티 - 1,186병(593 x 2병), 그랑프리 - 1,779병(593 x 3병)

2 회원종목단체 협찬음료 지급

ㅇ 지급대상 : 2021년도 3분기 사업 및 행사 지원 요청 단체(29단체)
ㅇ 지급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13시 30분 ~ 16시
ㅇ 지급장소 : 올림픽공원 내 남2문 B구역 p1주차장
ㅇ 지급품목 : 링티 15box(10,440ea) 약 100만원 상당

| 연번 | 단 체 명 | 연번 | 단 체 명 | 연번 | 단 체 명 | 연번 | 단 체 명 |
|---|---|---|---|---|---|---|---|
| 1 | 검 도 | 9 | 배 구 | 17 | 요 트 | 25 | 탁 구 |
| 2 | 게 이 트 볼 | 10 | 빙 상 | 18 | 우 슈 | 26 | 태 권 도 |
| 3 | 국 학 기 공 | 11 | 사 격 | 19 | 유 도 | 27 | 택 견 |
| 4 | 근 대 5 종 | 12 | 세 팍 타 크 로 | 20 | 육 상 | 28 | 파 크 골 프 |
| 5 | 당 구 | 13 | 수 상 스 키 | 21 | 자 전 거 | 29 | 펜 싱 |
| 6 | 레 슬 링 | 14 | 스 쿼 시 | 22 | 족 구 | 계 | 29단체 435box 10,440ea |
| 7 | 롤 러 | 15 | 승 마 | 23 | 컬 링 | | |
| 8 | 바 이 애 슬 론 | 16 | 아 이 스 하 키 | 24 | 킥 복 싱 | | |

3 코로나19 위로지원금 지급

ㅇ 지급대상 : 경기단체연합회 회원(2021년도 회비 미납제외)
ㅇ 지급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 2021년 12월 31일(금)
ㅇ 지급금액 : 1인당 현금 100,000원 / 계좌이체
ㅇ 지급예산 : 61단체 467명, 46,700,000원
- 484명 중 467명(1차 289, 2차 88, 3차 90)

2. 코로나19 사태 관련 연합회 활동

1 「코로나19」극복 체육인 헌혈 운동

ㅇ 일　　시 : 1차 : 2021년 5월 7일(금) 10시 ~ 16시
2차 : 2021년 5월 25일(화) 10시 ~ 16시
ㅇ 장　　소 : 올림픽공원 내 남2문 주차장
ㅇ 대　　상 :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가족 등

<2> 2021년도 결산 - 주요 내용

(단위: 원)

| 수입 | | | | 지출 | | | |
|---|---|---|---|---|---|---|---|
| 관 | 항 | 목 | 금액 | 관 | 항 | 목 | 금액 |
| 전기이월 | 이월 | 전기이월 | 129,794,514 | 경상비 | 운영비 | 사무행정비 | 35,454,523 |
| | 소계① | | 129,794,514 | | 인건비 | 급여, 퇴직적립금(기금) | 59,631,000 |
| 사업수입 | 회비 | 회비(회원) | 118,830,000 | | | 급여, 퇴직적립금(자체) | 7,920,768 |
| | 회의실 | 대관료 | 4,550,000 | | | 복리후생비 | 6,800,000 |
| | 소계② | | 123,380,000 | | 소계① | | 109,806,291 |
| 보조금 | 대한체육회 | 행정보조비 | 18,000,000 | 상조비 | 상조비 | 본인결혼 | 3,300,000 |
| | | 급여보조비 | 55,044,000 | | | 자녀결혼 | 600,000 |
| | | 퇴직적립금 | 4,587,000 | | | 자녀출산 | 2,200,000 |
| | | 계 | 77,631,000 | | | 조의금 | 900,000 |
| | 특별찬조 | 연수회 | | | | 퇴직자 전별금 | 25,040,000 |
| | | 대한체육회 | - | | | 상조기설치 | - |
| | | 회원종목단체 | - | | 소계② | | 32,040,000 |
| | | 체육인소통과화합한마당 | | 회의비 | 회의비 | 정기총회 | 450,225 |
| | | 대한체육회 | - | | | 이사회 | 1,065,500 |
| | | 회원종목단체 | - | | | 기타 회의비 | 1,577,100 |
| | | 워크숍대체소통강화지원 | | | 소계③ | | 3,092,825 |
| | | 대한체육회 | 5,930,000 | 사업비 | 연수회 | 직원연수회 | - |
| | | 계 | 5,930,000 | | | 워크숍 | - |
| | 소계③ | | 83,561,000 | | 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46,860,000 |
| 잡수입 | 이자 | 결산이자 | 123,576 | | 화합한마당 | 소통과 화합 한마당 | - |
| | 소계④ | | 123,576 | | 소통 강화 | 소통 강화 지원 | 5,930,000 |
| | | | | | 업무추진비 | 사무총장 | 2,400,000 |
| | | | | | | 대외활동비 및 출장비 | 776,000 |
| | | | | | | 대외 업무추진비 | 66,000 |
| | | | | | 소계④ | | 56,032,000 |
| | | | | | 예비비 | 예비비(기금,자체) | - |
| | | | | | 소계⑤ | | - |
| | | | | 합계 | | | 200,971,116 |
| | | | | 차기이월(21.12.31) | | | 135,887,974 |
| 총계 | | | 336,859,090 | 총계 | | | 336,859,090 |

② 참석자 주요발언: 없음

③ 논의결론: 원안의결

## 3.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 ① 주요내용

○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1 2022년도 사업 계획**

| 구분 | 회 의 | | 사 업(행 사) | | | 종목단체 |
|---|---|---|---|---|---|---|
| | 이사회 | 총회 | 연수회 | 화합한마당 | 워크숍 | 일정 |
| 계 | 3 | 1 | 2 | 1 | 3 | 3 |

ㅇ 세부일정(안)

| 월 | 구 분 | 일 자 | 행 사 명 | 장소 | 대 상 | 비고 |
|---|---|---|---|---|---|---|
| 2월 | 사 업 | 미정 | 2022년도 사무처장 워크숍 | 미정 | 사무처장 | |
| | 종목단체 | 2월4일~2월20일 | 제 24회 동계올림픽 | 베이징 | 동계OG 종목 | |
| 3월 | 회 의 | 미정 | 1차 정기(결산)이사회 | 서울 | 임 원 | |
| | 회 의 | 미정 | 2022년도 정기총회 | 서울 | 연합회 회원 | |
| 6월 | 사 업 | 미정/3일 |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 미정 | 종목단체 직원 | |
| 7월 | 회 의 | 중순/1일 | 제 2차 정기이사회 | 서울 | 임 원 | |
| 8월 | 사 업 | 중순/1일 | 2022년도 하계연수회 | 미정 | 연합회 회원 및 가족 | |
| 9월 | 종목단체 | 9월10일~9월25일 | 제 18회 아시안게임 | 항저우 | AG 종목 | |
| 10월 | 전국체전 | 10월7일~10월13일 |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 울산 | 전국체전 종목 | |
| 12월 | 회 의 | 미정/1일 | 제 3차 정기이사회 | 서울 | 임 원 | |
| | 사 업 | 미정/2일 | 회원종목단체 워크숍 | 미정 | 종목단체 직원 | |
| | 사 업 | 미정/1일 | 2022 체육인 소통과 화합 한마당 | 서울 | 연합회 회원 및 가족 | |
| | 사 업 | 미정/2일 | 2022년도 동계연수회 | 서울 | 연합회 회원 및 가족 | |

## 2 2022년도 예산(안)

<요약 수입·지출 예산(안) 내역>

(단위: 원)

| 수 입 | | | | 지 출 | | | |
|---|---|---|---|---|---|---|---|
| 관 | 항 | 목 | 금 액 | 관 | 항 | 목 | 금 액 |
| 전기이월 | 이월 | 전기이월 | 135,887,974 | 경상비 | 운영비 | 사무행정비 | 23,454,400 |
| | 소계① | | 135,887,974 | | 인건비 | 급여, 퇴직적립금(기금) | 60,228,840 |
| 사업수입 | 회비 | 회비(회원) | 115,200,000 | | | 급여, 퇴직적립금(자체) | 20,653,597 |
| | 회의실 | 대관료 | 5,000,000 | | | 복리후생비 | 6,800,000 |
| | 소계② | | 120,200,000 | | 소계① | | 111,136,837 |
| 보조금 | 대한체육회 | 행정보조비 | 18,000,000 | 상조비 | 상조비 | 본인 결혼 | 3,000,000 |
| | | 급여보조비 | 55,596,000 | | | 자녀 결혼 | 1,500,000 |
| | | 퇴직적립금 | 4,632,840 | | | 자녀 출산 | 3,000,000 |
| | | 계 | 78,228,840 | | | 조의금 | 1,500,000 |
| | 특별찬조 | 연수회 | | | | 퇴직자 전별금 | 20,000,000 |
| | | 대한체육회 | 18,000,000 | | | 상조기 설치 | 100,000 |
| | | 종목단체 | 5,000,000 | | 소계② | | 29,100,000 |
| | | 소통과 화합 한마당 | | 회의비 | 회의비 | 정기 총회 | 2,000,000 |
| | | 대한체육회 | 19,000,000 | | | 이사회 | 2,000,000 |
| | | 종목단체 | 8,000,000 | | | 기타 회의비 | 4,000,000 |
| | | 계 | 50,000,000 | | 소계③ | | 8,000,000 |
| | 소계③ | | 128,228,840 | 사업비 | 연수회 | 직원 연수회 | 39,000,000 |
| 잡수입 | 이자 | 결산이자 | 150,000 | | | 워크숍 | 1,000,000 |
| | 소계④ | | 150,000 | | 화합한마당 | 소통과 화합 한마당 | 18,000,000 |
| | | | | | 업무추진비 | 임원 업무활동비 | 24,000,000 |
| | | | | | | 대외활동비 및 출장비 | 3,000,000 |
| | | | | | | 대외 업무추진비 | 1,000,000 |
| | | | | | 소계④ | | 86,000,000 |
| | | | | 기타 | 예비비 | 예비비 | 10,000,000 |
| | | | | | 기타 | 예탁금반납 | 12,430 |
| | | | | | 소계⑤ | | 10,012,430 |
| | | | | 합계 | | | 244,249,267 |
| | | | | 차기이월(22.12.31) | | | 140,217,547 |
| 총 계 | | | 384,466,814 | 총계 | | | 384,466,814 |

### ② 참석자 주요발언

○ 회장: 올해 22년도 사업은 그렇게 크게 잡은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자는 게 사무처와 저희 집행부 생각이니까 예산 편성한 내용에 맞춰서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착실

히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이의사항 없으시죠 있습니까?
ㅇ ㅇㅇㅇ 이사: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기억에는 2007~8년까지는 했었던 것 같은데 동호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ㅇㅇㅇ 이사께서 한번 위원장도 맡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원들끼리 종목 체험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했었을 때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체계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맨날 처장님들끼리만 만나서 이제 하지 말고 직원들끼리 좀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업이고 실제로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인 사업이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연합회에서 물론 실정상으로 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월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월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못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연합회에서 지원한다라는 프로그램 정도는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ㅇ 회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사무총장께서 몇 번 여러 번 얘기를 한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연합회가 사실 사무처장만의 연합회가 아니고 전체 회원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너무 그쪽에다 많이 지출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56페이지에 예산안 보면 임원업무활동비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증감에도 좀 차이가 있고 오타인 것 같습니다.
ㅇ 회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업무 활동비 늘어난 부분
ㅇ ㅇㅇㅇ 팀장: 임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제 꾸준히 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지적사항 조치로 월에 1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12개월 일단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사무처 규정에 이제 임원의 보수 저희 사무총장님 보수(활동비)가 들어가서 네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ㅇ 회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무총장이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 제가 이 회장이 되면서 전체 규정을 손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경기단체의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부당함을 우리가 이제 대변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실제로 사무처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

까 너무 좀 허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진행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조금 30만 원씩 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비로 주기는 하지만 기왕의 일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장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회장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비용은 저는 안 쓸 겁니다. 제가 연맹의 비용을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 비용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나머지의 사무처라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좀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ㅇ ㅇㅇㅇ 이사: 58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회장님 활동비 천이백 그다음에 총장님 천이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연합회에서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총장님 같은 경우는 회장님하고는 좀 다르게 협회 본인께서 하시는 업무도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의 배려는 좀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ㅇ 회장: 따로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제3호 의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③ 논의결론: 원안의결**

## 4.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

**① 주요내용**

**ㅇ 2022년도 정기총회 개요**

- 일　　시 : 2022년 4월 중
- 장　　소 : 온라인(줌)
- 참석대상 : 경기단체연합회 회원

**※ 총회 성원 60명**

-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감사 보고
3.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4. 규정 제·개정의 건

- 심의사항

1. 2021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2. 규약 개정(안)

**② 참석자 주요발언: 없음**

**③ 논의결론: 원안의결**

## 5. 임원 선출 규정 관련 논의

### ① 주요내용

<1> 피선거인(안)

| 구 분 | 의견수렴결과 | 피선거인(안) |
|---|---|---|
| 1안(현행) | 26 | **회장:**사무처장 / **사무총장:**직원 / **감사:**사무처장1/직원1 |
| 2안 | 5 | 연합회 가입 10년 이상 전 직원 |
| 3안 | 4 | 기타의견: |

<2> 선거인(안)

| 구 분 | 의견수렴결과 | 선거인(안) |
|---|---|---|
| 1안(현행) | 23 | 경기단체연합회 전 회원 |
| 2안 | 7 | 종목별 2명 |
| 3안 | 1 | 선거인단(랜덤추첨) |
| 4안 | 3 | 기타의견: |

<3> 경기단체연합회 임원 선거일정(안)

| 구 분 | 의견수렴결과 | 선거일정(안) |
|---|---|---|
| 1안(현행) | 22 | 정기총회 일정 내 |
| 2안 | 9 | 선거일 지정 |
| 3안 | 3 | 기타의견: |

### ② 참석자 주요발언

o 사무총장: 제5호 임원 선출 규정 관련 논의입니다. 앞서 잠시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연합회 임원 선출 규정 관련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해서 저희가 연합회에서 먼저 조사하기로 했는데 70% 정도가 기존대로 현행대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피선거인 후보자로 올라오

는 인원에 대해서 현행은 회장이 되려면 사무처장 중에서 그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무총장은 일반 직원 처장이 아닌 직원급에서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게 현행이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 개선을 해서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10년 이상 정도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는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보고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2안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기타 안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현행을 유지하자는 게 78%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같은 경우에도 경기단체 직원들 전 대상으로 회의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그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큰 종목은 인원이 많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작은 단체는 인원이 적은데 그런 부분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종목별로 대표자를 2명으로 지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처럼 선거인단을 좀 구성을 해서 랜덤 추첨을 해서 좀 간소화 해서 진행을 하자 의견이 있었는데 이 또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의견이 70%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연합회 임원 선거 일정에 관련해서 우리 규정에는 총회 일정으로 돼 있는데 총회 당일날 이 의를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 다 끝나고 끝에 이제 선거를 한 상황이 되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을 따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냈었는데 이 또한 정기총회 일정 내에 하는 것 하는 것이 67%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회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ㅇㅇㅇ 이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앞에 종목별로 의견을 다 들어서 여기서 이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선거에 관해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돈순 회장님 당선되실 때 온라인 투표를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참여율이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총회 때 다 참석을 해서 선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고 또 가까이 있지 않는 형태들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회장 선거는 전 회원이 좀 모두 참여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온라인 모바일 투표로 아예 정관에 좀 박아놓으면 참여도도 높지 않을까 또 어쨌든 회원들의 의사 반영도 전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선거 방식은 좀 바꾸는 걸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번에 저희 직원도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에 임하니까 그런 어떤 참여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일이 있다보니까 많다 보니까 자기 시간대에 따라서 총회에 이렇게 나가기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직접 선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요즘 대세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규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그런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회장: 규정을 사실은 여기 임원 선출 규정에 대해서 안건에 상정하게 된 그 계기는 사실은 저번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부분은 너무 선거가 이게 과열된다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몸소 체험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좀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좀 과열되지 않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좀 분열되는 부분을 좀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부분의 공약 사항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우리 부회장님들은 사전에 모여서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이사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각 연맹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선거 인원을 처장의 대표자 한 명 연맹의 직원들의 대표자 한 명 그 정도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하면 좀 축소되고 심플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연맹의 의견을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론이고 대세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서 그 부분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 의견을 공유한 부분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선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 인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참여율도 높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예 그러면 그 선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못 박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 이사: 회장님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 단체 여기 경기단체연합회잖아요. 그러면 각 종목별 연합회인지 아니면 경기인 체육인 구성 연합회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각 종목별 연합이라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해지거든요. 각 종목의 역할이라고 하면 종목의

대표자나 아니면 여러 명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거고 이 체육단체 구성원들 직원들이든 이 전체 구성원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거라면 전원이 추천하는 게 맞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들도 똑같잖아요. 지금 반반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단체도 빗대어서 보면 똑같은 거라고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보였고 저는 참고로 이제 국민생활체육회 쪽에 생활체육 쪽에서 왔는데 그때는 처장단이 임원을 겸하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랑 처장들이랑 같이 처장이랑 투표하지 않았어요. 처장단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임원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형식이 생겼냐면 기존에 어차피 그 종목의 대표라면 그 종목들은 거의 컨트롤 한다고 치면 대부분 누구를 지지한다는 거는 거의 80~90%가 동일하게 가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제가 처음에 여기 대한체육회에 들어와서 놀랐을 때 그 몇백 명이 모여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누구를 밀어줘 그러면 그 다섯명이 똑같이 쏙 찍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이게 종목별로 구성된 경기단체 연합인지 아니면 종목 안에 정말 회원들 구성원이시는 거지 실의를 알고 싶어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ㅇ 회장: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개개인마다 회비를 다 내는 부분이고 원래 우리 정관에 보면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종목보다는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원이 되려고 하면 종목의 그 멤버가 돼야지만 회원이 되는 거니까 둘 다 맞는 회원인데 지금 오늘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번 집행부에서는 모든분들이 다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부분을 저는 이게 모토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어느 개개인이 한두명이 뭐를 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전체적인 뜻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한 거 보면 거의 과반이상이 현행을 유지하는 부분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이사님들도 다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ㅇ ㅇㅇㅇ 이사: 회장님이 이거를 하신 이유는 이제 선거를 너무 이제 기업이라든지 비슷하다는 갈등 때문에 사실 하시는거라면 회장님 의견이 이제 민의를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시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하나를 하자 논의를 통해서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ㅇ 회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규정상에 보면 회장이나 나머지 감사나 이런 부분은 처장이 한 명 그다음에 직원이 한명 감사는 구성이 되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장 중에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각 연맹에서도 그렇고 사무처장에 대한 역할이나 비중이 굉장히 사실은 크거든요. 회장님이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은 사무처장들이 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연합회 사무처에도 보면 실제로 사무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운영하는 그런 포지션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왜 직원들로만 국한해놨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회장은 사무처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직원은 사무총장을 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변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총장에 대한 부분을 굳이 직원으로만 국한돼서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전체 인원 중에서 용량이 되는 분은 다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ㅇ ㅇㅇㅇ 이사: 규정 검토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규약 제5조를 보시면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 바로 여기고 직원이라 함은 각 종목단체의 사무처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종목 처장 및 이 정도로 총칭한다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회장은 사무처장 중에서 한다는 제한점이 생길 것 같고요 하지만 사무총장은 직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최상위 규정은 규약에서 생긴 이 용어의 정의대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적으로 직원에 한한다라고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규정적 해석의 잣대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미 통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ㅇ 회장: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ㅇ ㅇㅇㅇ 이사: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이 하면 사무처장들도 다 직원의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61페이지 보면은 기타 의견에서 당구에서 주신 의견이 있는데 사실 회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사무총장하고의 업무가 동일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저희 단체에서도 회장님하고 사무처장하고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것도 동의를 받아서 회장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 자문위원: 아니 처음에 연합회 구성하고 그럴 때 사무총장까지 사무처장이 그 당시 사무국장이 맡아서 하는 상태가 되는 사무국장 모임이지 직원 모임이 되느냐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선을 그어서 회장은 사무국장 중에서 하고 그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사무총장 역할이 크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국장이 맡아서 하는 상태가 되면은 잘못하다 보면 직원들 자체 오해가 살 수가 있다. 왜 직원들 사무국장들 모임이지 어떻게 전체적인 연합회 모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총장은 직원 중에서 하자 하고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그런 문제인데 여지것 지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 역할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나 의회에서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직원 연합회 사무총장이다. 같은 부장이나 과장 부장 그런 명함이나 내놓는 것보다 일단은 어느 한 쪽 사무처장이면서 우리 연합회 사무총장이다 하는 걸 내세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합회의 위치가 지금 위상이 많이 높아진 입장이고 그런 거니까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좀 폭을 넓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 이사: 말씀드리면 일단 참정권의 문제하고 좀 같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이라는 선출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 처장도 직원이잖아요. 직원 중에 처장만 그게 이제 그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이제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장은 회장도 자기가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총장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어떤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고 직원들은 하나의 권한만 가지게 되어서 동등한 어떤 회원으로서의 약간 참여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마 영역을 구성을 해서 감사도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같은 직원 카테고리 안에서 처장만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해서 감사라는 부분은 처장을 지정을 해서 한 명을 가는 거고 나머지는 직원이라는 부분으로 구분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회가 전 사무처 직원의 구성원으로 된 그 어떤 모임이라고 본다고 하면 동등한 참여권을 주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이사: 사실은 지난번에 이 안건 얘기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드렸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회장을 사무처장이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저희 규정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회원이 모이는 거니

까 그런데 실질적인 걸 생각해 보면 직원들이 직원 중에서 여기 연합회 회장이 됐을 때 그 직원이 과연 협회일을 하면서 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놓더라도 회장 선거에 과연 직원이 나오고 또 그 직원이 당선될지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냈던 건 총장이든 감사든 회장이든 간에 우리 규정에 전 회원이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원이기 때문에 그 회원 중에서 회장이 누가 되든 총장이 누가 되든 감사가 누가 되든 자기 직급하고 관계없이 다 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지금 회장님이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 역할도 직원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무처장들 중에서도 사무총장을 할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는 어쨌든 처장하시는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논의할 때 회장 사무총장 감사에 대한 직급별로 이렇게 나눠놓지 말고 연합회 전 직원이면 회장이든 사무총장이든 감사든 나올 수 있게 정관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직원 중에는 총장을 하고 처장 중에는 회장을 한다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회장 총장에 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좀 없애고 회원이면 다 출마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정관상의 취지에도 맞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냈었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일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게 노조는 노조는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간결권도 있고 체결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연합회는 특히 합법적인 단체 그렇게 된다면 노조는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위원장이 나올 수가 있고 차장이든 뭐든 다 할 수가 있지만 연합회는 잘못하면 연합회 간의 노조 간에 사원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처장인 사람이 나왔고 직원인 사람이 또 회장으로 나왔을 경우에 과연 출사했을 때 대부분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회원들이 그렇다고 직원들이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쪽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차라리 그냥 처장 뽑았었는데 처장 뽑았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 우리 직원이 이번에 다 밀어주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직원이 연합회 회장이 됐을 때는 그 단체 사무처장이 활동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무하러 오는 종목에 근무하러 왔지 너 연합회 하러 왔어 니가 하는 업무를 왜 못해 하고 자꾸 태클을 걸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회는 조직상 어쩔 수 없이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회장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이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 그 취지도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부회장님 말씀대로 ㅇㅇㅇ 이사님 말씀대로 연합회에 이제 좀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회장은 사무국장이 하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또 회원끼리의 다 회원이니까 그러면 이런 취지가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테고리 구분을 해서 했는데 현행대로 이거는 유지하고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 너무 진짜 내가 보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해 내가 그래서 물론 ㅇㅇㅇ에서 욕 안 먹나 이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또 아까 말대로 이게 노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또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잘못하면 한쪽으로 우리는 직원이니까 직원 밀어야지 이런 취지도 좀 되면 모양새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무처장도 회비 똑같이 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니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지금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아무튼 이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당한 변화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보다는 기존 이제 어떤 의견대로 진행을 하되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걸 찾아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ㅇ 회장: 정리하겠습니다.
ㅇ ㅇㅇㅇ 자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체부에서도 경제단체연합회라는 걸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대한체육회하고 거의 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연합회나 노조에서 강의를 하고 하는 상태가 되면 대한체육회 쪽에 문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으로 먼저 문의 와서 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하고 사무총장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큰 입장이거든요. 아까 우리 ㅇㅇㅇ처장님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만약에 사무총장을 나가서 하는데 협회 일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오는 거니까 협회 일도 하지만은 대신 협회 일하더라도 우리 연합회 이를 보더라도 각 경기도 소속된 단체에서 태클을 안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런 분이 사무총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진짜 자기 종목에서 그런 비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ㅇ ㅇㅇㅇ 이사: 우리 단체 연합회 규약 제12조 6조에 보면 사무총장은 직원에

서 선출하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피선거권 사무총장은 직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처장부터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처장 총장도 사무처장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ㅇ ㅇㅇㅇ 이사: 사무총장에 한해서는 직원 전 제5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직원이랑 함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태까지 이 직원에 대한 한정은 제가 봐서는 이사회 때 회장이나 사무총장 선출했었을 때 사무총장은 일반 직원으로 한다를 아마도 이사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규약상의 해석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원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까지도 직원들하고 봐야 되는 게 맞을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렇다고 그러면은 사무총장의 직원이라고 그래서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아니 오해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인데 약간 오해가 생긴 건 뭐냐 하면 회장은 사무처장 이렇게 돼 있고 사무총장을 직원 나오는 여기에 보시는 분들은 회장은 처장만 하는 거고 사무총장은 직원만 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사무총장은 전 직원 가로열고 사무처장도 해당 됨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사무처장은 제외하든지 사무처장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화합이잖아 화합하는 거니까 하는거지요

ㅇ ㅇㅇㅇ 이사: 사무총장은 회장과 같은 오른팔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의 역할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야당에다가 이렇게 줘서 맨날 트러블생깁니다. 물론 견제하는 차원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우리 연합회 구성원들이 요새는 굉장히 큰 일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 내가 장인 사람들인데 무조건 상대방에 한 사람하고 했을 때는 관련 제대로 돌아가느냐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양이면 다음에는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런닝메이트로 나와가지고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ㅇ ㅇㅇㅇ 이사: 지금도 사실상 회장 선거 나오실 때 그런 경우 그렇죠 많이 있기는 할 텐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회장님께서 정리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제12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다섯 번째 안건의 논의의 테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 첫 번째 안건을 제 마지막으로 돌리자라는 조건부 의결을 해 주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구적 의견이다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설문 자체가 회장 선거 규정을 바꾼다라는 약간의 전제가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풋이 그렇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아웃풋이 저희가 이렇게 드렸었던 건데 저도 ㅇㅇㅇ 이사님 말

씀대로 근데 이제 직원이 선거에 나가는 부담이 문제 사무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도 많은 사무처장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선거가 부담스러워서 회장 선거는 사무총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까 이제 ㅇㅇㅇ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미 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 이사님들께서 바꾸시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첫 번째 정리의 말씀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회장 선거 때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협화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각종 민원들이 있었을 때 사실상 모든 처장님들이 회장 선거 때마다 고초를 갖고 계시잖아요. 회장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해서 선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마도 여기 연합회 사무처에서는 이 회장 선거의 모함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다른 부분들은 좀 각론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해서는 선관위가 있다든지 혹은 뭔가 사무처가 결정하는 그런 체계를 안 만드시고 오히려 이제 선거 관리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약에는 넣고 나중에 규정에서 지금 이 논의들에 대한 부분들을 드시는 게 어떨까

ㅇ ㅇㅇㅇ 이사: 동의합니다.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ㅇ ㅇㅇㅇ 이사: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사회에 처음 참석한 입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 노조가 있고 연합회가 있잖아요. 노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노조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체성이 분명한데 연합회의 정체성이 뭘까 이제 저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연합체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55페이지에 올해 예산안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친목단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육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종목 간의 협업이라든지 아까 처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를 통한 종목 간의 유대 업무를 강화한다든지 또 체육회에서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체육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종목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체육회와 조율해서 체육회에서 개선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연합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에 처음나온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설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 주셨지만 저는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현행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고 과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경력이 좀 짧지만 연합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어떤 열심히 따라가 도록 하겠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회장님 연관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좀 여쭤보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처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또 이제 지금의 통합을 하면서 사무처장의 관계하고 사무국장 관계하고 전무이사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마 종목별로 경기단체연합회면 뭔가는 제시가 돼서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이 의미는 제가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부회장님 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직원도 똑같이 직원의 관계에서 한 명 한 명에서 화합해서 같이 이끌어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처장이 직원화된 거는 통합 과정에서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 종목은 임원으로 오다가 직원의 개념으로 가면 임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활체육 했던 종목들은 전무이사 정도의 권한이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아마 여기 ㅇㅇㅇ 처장님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할 때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해서 협의할 때도 대한체육회 쪽에서는 사무국장님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은 사무처장이 임원들 임원급입니다. 나가서 통합을 할 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도 지금 똑같은 그런 직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처장이 국장급인 건지 같은 레벨인 건지 같은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부서가 행정부서가 처면 처장으로 부르는 거고요 무슨 무슨 국이다. 그러면 국장입니다. 그래서 국장과 처장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서가 팀이야 부냐 그래서 부장이라고 하면 부장 제도가 있는 거고 사장도 사장 제도가 있는 거고 국장 제도는 국장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국장이 누구냐 처장이 누구냐는 그 부서에 어떤 조직상의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연합회에서는 국장과 처장하고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ㅇ ㅇㅇㅇ 이사: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 대한체육회 규정에서는 이번에 처장으로 갔다가 생활체육회 체육회는 사무처장으로 부르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종목처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경기단체에서 잘 또 말씀들 하셔

서 이번에 규정에 그냥 사무처장하고 똑같이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와 제가 저는 이제 관련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느끼는 거는 사무처장을 임원급 생각으로 해서 유일하게 생각을 해서 한 분하고 직원들하고 한 분하고 해가지고 회장님은 이쪽에서 뽑고 직원들 중에서 총장을 뽑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으로 지금은 사무처장이 직원이니까 총장도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ㅇㅇㅇ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규정에 규정 5조에 명시가 아예 딱 돼 있어요.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처장하고 직원하고 합쳐서 말하는 거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구분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 취지가 있으시면 만든 취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취지에 맞게 조정할 것 같으면 또 정하고 오는 대로 갈 것 같으면 가시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연합회 구성원들끼리 화합해서 이끌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갖고 취지를 말씀해 준 거거든요. 각 중목의 중목별에 현안 사항이나 해결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면 그런 걸 협력해서 끌어가야 될 경기단체라고 하면 대표자 구성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화합의 위주로 해서 직원들의 화합 위주로 간다고 하면 투표도 전 직원들이 회원들이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ㅇ ㅇㅇㅇ 이사: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받아서 현행대로 가는 걸로 한 거고 사무처하고 사무국은 옛날에 엘리트 쪽은 사무국 그래서 국장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사무처로 해서 사무처장인데 통합하면서 사무처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처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직원이에요. 월급 받고 있으니까 직원이지 근데 직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화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무처장 사무국장 제외 그거는 회장님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직원이 했다가 직원이 나중에 자기 일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단체연합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회장 자리를 직원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처장은 직원이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임원의 성격을 거의 다 둬요 어느 연맹이든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얘는 월급 받고 있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처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막말로 회사 같으면은 기획해서 이걸 끌고 가서 회장님한테 받고 회장님의 지시도 받고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ㅇ ㅇㅇㅇ 이사: 하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명칭에 처장이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같은 의견이면 처장 바로 국장님이 사무국장에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 회장: 안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잠깐 안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발언 건을 얻어서 얘기하죠. 먼저 얘기 하시죠
○ ○○○ 자문위원: 아니 이게 통합이 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정했습니다. 중앙은 사무처장 시도지부 시도체육회는 사무국장 이렇게 정해놨는데 대한체육회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 그리고 전무이사 제도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먼저 부회장하고 사무처장들 회의할 때 이기흥 회장님 계실 때도 대한체육회 직원들인데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선을 확실히 걸어 모임하고 그러면 부회장이 있고 이사들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꼭 전무이사 그걸 넣어갖고 여기 저기 하려고 그랬대 몇몇 단체가 전무이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기네가 안 쓰기로 했어 쓰지 말아야지 우리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사무처 중앙은 사무처장이고 시도협회들은 사무국장입니다. 그 선만 지켜주시면 돼요
○ ○○○ 이사: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 의견을 냈던 거 저희 직원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이 의견수렴을 했으니까 거의 결정을 이렇게하되 지금 논의에서 나왔던 사무총장에 대한 것들 지금 의견 수렴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명직으로 갈 건지 저희 직원부터 사무처장까지 풀 건지 이거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또 받아서 추후에 5조에 대한 직원에 대한 그냥 정관을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 임명직으로 할 건지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 ○○○ 이사: 어차피 총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실 예정인데 의견수렴도 좋기는 한데 의견수렴 하게 되면 사실상 질문지나 혹은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총회에서 지금 ○○○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루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의견수렴에 의견수렴이 더해지면 사실 1년 내내 의견수렴하다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
○ ○○○ 이사: ○○○에서 노조를 한 5년 이상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피선거권에 대한 공문을 갖고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장 한 분에 직원 20명이 붙어 있으니까 쪽수로 하면 피선권을 못 지켜냅니다. 어차피 사무처장 그래서 일부러 공문 처리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근데 다른 의견은 그냥 전 직원에게 온라인에서 풀어버리시면 또 집행부 저는 어차피 여기 친정 식구니까 집행부 의지대로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지금 이럴 때는 전체 의견을 묻고 이럴 때는 이 소수의 의견으로 모은다면 사실은 집행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회 안건으로 갈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안건을 그대로 총회로

갔다가는 전체 다 바꾸셔야 될 상황까지 나올 것 같아요. 피선거권이 선거권도 이번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의견수렴 결과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출되신 회장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원안대로 찬성을 하되 여기서 사무처장을 직원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사무총장에 대한 유권 해석은 아예 가능한 것으로 일단 놓고 그냥 가시는 게 낫다 지금 드러난 게 사무처장은 총장을 못한다라는 적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적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직원들은 전부 다 사무처장협의회가과 존재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드러내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권해석은 당연히 가능하되 문구 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그냥 가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ㅇ ㅇㅇㅇ 이사: 회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논의가 이렇게 원안대로 갈 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총회에 이 안건을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넣어서 또 다른 총회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총회 관련돼서 저희가 의결을 했지만 이 부분은 좀 굳이 총회에서 원안하고 다른 결과가 있다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ㅇ ㅇㅇㅇ 이사: 총회 안건으로 올리자고 한 내용이 이 내용은 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총장직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꿀 건지 그거를 지금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갈라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규정이 어차피 규약 자체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라는 거지 한 건 한 건을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건 소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ㅇ ㅇㅇㅇ 이사: 이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5호 안건도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안에 녹아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사회에서 저희가 논의할 게 아니라 이미 의견수렴 다 했고 과반수 이상이 기존 안을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규약 개정안에 반영이 굳이 개정되는 내용으로 반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조금 전에 저희가 여기서 논의했던 것처럼 어떤 직원에 대한 명칭의 해석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어떻게 규정을 좀 다시 지금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니까 어떻게 고치자라고 정리를 해놓고 의결 한 거 이제 총회에다가 통해서 최종적을 결정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ㅇ ㅇㅇㅇ 이사: 저야 규정대로 가시고요 규정 안에 유권해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정리하시죠 이제
ㅇ ㅇㅇㅇ 이사: 사무총장 사무처장이고 사무총장을 직원이라고 해서 명시 지금 이 안을 다 찬성을 했으니까 지금 5조 구성하고 12조 선출 방법에서 사무총장과 직원 중에 따라 선출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 중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원안대로 조금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원안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ㅇ 회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의견을 자세히 제가 발언권을 드린 부분은 사실은 기타 안건이 길게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않아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개개인마다 의견을 다 들어본 거고 그다음에
첫째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의견을 각 경기단체나 개인 의견을 물어본 부분은 이게 선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개선의 생각은 있었지만 이게 한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총회에서 전체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바꾸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집행부를 구성한 부분은 소수 인원으로 전체 내용을 효율적으로 바꿔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사분들이 다 그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 과반 이상 찬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내용은 규정을 바꾸지 않고 원안대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둘째 당초에 ㅇㅇㅇ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총론에 나와 있는 우리 정관에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의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사실 우리가 좀 규정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제가 회장이 되면서 나근주 이사님을 규정 개정 위원장님으로 모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이사회에서 ㅇㅇㅇ 위원장님한테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좀 위임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이
세 번째 이 내용이 총회로 올라가는 부분은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정관 2호 안건에 다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선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대로 가는 거라서 굳이 총회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ㅇㅇㅇ 이사: 네 찬성입니다.

ㅇ 회장: 위원장님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위임을 해 주셨으니까 다 같이 해야죠. 저도 그렇고 필요하면 제3의 기관에라도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ㅇ ㅇㅇㅇ 이사: 그 가시면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갖다가 사실은 차기 이사회 때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렇게만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의견 드렸던 선관위나 혹은 선거관리 규정을 별도로 하는 걸로 정하실건지

ㅇ 회장: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의 의견을 동의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회의록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금 전체 안건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의사봉 3타)

**③ 논의결론: 원안의결 후 규약 용어 유권해석 관련 규정 심의 위원장에 위임**

## □ 기타사항

### ① 주요발언

ㅇ ㅇㅇㅇ 이사: 40페이지에 45조 약간 새로운 결과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년퇴직이 기존의 저 60세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합회에서 먼저 박차를 좀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차하게 왜 65세까지 연장을 해야 되냐라고는 설명드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2~30년 60세 정도 58세 55세 60세 8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라고 봤을 때 연금도 연금도 약 65세 이상 정도가 돼야 나옵니다.

ㅇ ㅇㅇㅇ 자문위원: 법에 대해 죄송한데 대한체육회에서 임원들이 생각하고 하는 거는 각 경기단체 정년이 없습니다. 60세가 정년이 아니에요. 정년이 아닌데 지원금을 안 주겠다 하는 게 60세로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대한체육회에서 각 경기단체 정년이라고 생각한 건 60세까지 지원금을 주는 거고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보조금을 안 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겁니다.

ㅇ ㅇㅇㅇ 이사: 이게 물고를 터야지 다른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ㅇ ㅇㅇㅇ 이사:그거는 제가 봐서는 각자 단체 사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건 맞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중앙 단체는 사무처장이고 시도는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명하듯이
ㅇ ㅇㅇㅇ 자문위원: 지금 정년 연장시키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봐요
ㅇ ㅇㅇㅇ 이사: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ㅇ ㅇㅇㅇ 이사: 저희 회장님 저도 제안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회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합회 와서 이렇게 참여한 지가 한 올해가 6년째밖에 안 돼서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연합회 위상이 좀 높아진 게 틀림없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기흥 회장님이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걸 부정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대한체육회장님이 이제 다른 분이 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연합회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연합회 자체적으로 이 조직을 이렇게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보다는 회장님이 좀 외부의 좀 전문가라든지 또 내부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해서 대한체육회와 별개로 우리 연합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안 같은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 제가 얘기도 좀 들어봤고 또 국민생활체육회에 있을 때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 보니까 회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위상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좀 물론 당장 급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연합회가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한번 마련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ㅇ 회장: 저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도 사실은 우리 ㅇㅇㅇ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보면 그냥 우리 친목 단체에 국한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는 그런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외부에서 보는 위상은 좀 올라갔는데 도대체 너네들이 뭐하는 단체고 뭐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가이스프를 들어가서 이렇게 서핑을 해보니까 얘네는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형태 자체는 조금 틀리죠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모방해서 유사하게 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외부에서

보는 우리 내부적으로 결속력 있고 탄탄하게 꾸려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규정을 잘 만들어 놓는 포장해 놓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토대 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더 역량을 키워나갈 건지 우리가 활성화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제가 토대를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논의하시는 부분들 여러 이사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오랜만에 이사회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해줘서 함께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ㅇ ㅇㅇㅇ 자문위원: 회의는 다 정리됐다고 그랬는데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 정부 쪽하고 먼저 양쪽에 저희가 이재명 캠프하고 윤석열 캠프에 저희가 문체부 혁신안 재검토해 달라는 걸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양쪽에서 다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하루 먼저 발표를 하고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연합회 제가 행정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권 보장 해가지고 국민 학생들 11월 다 내년부터는 빵일 1개월 다 다 바뀌고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했더니 선거 끝난 다음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양쪽 캠프에서 혁신안을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행정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생각해서 윤석열이 쪽이었는데 윤 씨가 지는 상태가 되면 또 잘못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해달라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체육인 쪽에 인수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안민석이보다 더한 더 나쁜 놈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발표를 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데 우리 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회는 지금 국고를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행사가 어느 상태에서 국고를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노조로 바꿨어요. 노조는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우리 경제단체연합회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 입장이라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금 강래혁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당선인 쪽에서 지금 혁신안을 재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검토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수업일수 그런데 지금 주

말 대회를 하더라도 학생들 사전에 연습하려고 하면은 2 3일 전에는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10일을 다 까먹어요. 연습하다가 시합하기 전에 연습하다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정지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경제단체에서 같이 호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 간부하고 강래혁 변호사하고 그런 얘기가 이게 문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17개 각 최고 체육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학생들 지도자들 학부형들한테 동의서 사인을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10일 학습권 보장에서 대회 출전 기간 11 15일 그 자체를 체육고등학교도 전체가 다 그 위에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다 최고라고 예를 드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몇 몇 대 학교 교장들하고 얘기했더니 그거 하면은 우리도 충분히 다 저기 사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경기 단체 70개 경기단체가 지금 다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임원전체: 동참하겠습니다. 합니다.
○ ○○○ 자문위원: 당연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처음에는 여러분들 공문 봤을 때 초등학교 빵일 중학교 빵이 나왔었죠. 그거 소프트테니스 학부형들이 문체부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어 문체부에 전화하니까 자기네가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온 거다 또 교육부에다가 전화했을 때 교육부는 문체부에서 지시 내려왔게 서로 다 핑퐁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12일 15일로 이게 조정이 돼서 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진짜 완전히 빵이 될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동참해 주면은 지금 강래혁 변호사 거의 문구를 만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거 할 때 우리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많은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사: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2020년도에 이천시청팀 해체 됐는데 그때 경기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작년에 올해 또 재검토 요청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밀렸는데 또 국민청원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해결이 다 됐고요 이천시청은 올해 재창단이 돼서 경기에 출전하게 됐고 재무 쪽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한 4500만 원 모금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장: 정말 잘 됐고요 기타사항도 많이 말씀하셨고 바쁘시니까 이걸로 회의를 종료하고
○ 사무총장: 회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 회장: 네 아직 제가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이번 지금 ○○○ 자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스포츠 포럼 대한체육회 같이해서 스포츠 포럼을 하는 게 있어요. 4월 28~30일 그 안에 할 건데 5월 9일날 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학습권하고 체육 정책이 제대로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먼저 한번 스포츠 포럼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경기단체 별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신경을 쓰고 지원을 몰아줘야지만 빛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제가 의결권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일부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사무총장 피선거권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해보니까 일반 직원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일반 직원 신분일 때 이제 여기 이제 참여도 하려면 사무처장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오늘처럼 이사회 같은 것도 하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공석이기 때문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일반 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 이사님께서 앞에서 저 앞에 이제 친목 단체 성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친목 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지금 앞서 이제 전영석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분이 정책으로 들어왔다 하는 분과 이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 종목 단체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직원 to 증가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국회의원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직원 to도 한 명 더 늘리고 그 늘리는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좀 올리고 전체 직원도 국고화하고 그리고 직원 to를 자체의 직원을 신규 회원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직원을 자체 비용을 국고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지금 논의할 생각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면담 일정을 잡게 됐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장: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폐회선언: 11시 55분)

## 3 참석자 서명부

- ㅇ 재적이사 30명중 19명
- ㅇ 자문위원 1명
- ㅇ 직원 2명

### 2022년도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제 1차 정기(결산)이사회 서명부

| 연번 | 구 분 | 성 명 | 단체/종목 | 직 위 | 서 명 |
|---|---|---|---|---|---|
| 1 | 회 장 | 김 돈 순 | 육 상 | 사무처장 | |
| 2 | 수석부회장 (2) | 김 은 석 | 카 누 | 사무처장 | |
| 3 | | 소 명 선 | 댄스스포츠 | 사무처장 | |
| 4 | 부 회 장 (4) | 정 충 흠 | 게 이 트 볼 | 사무처장 | |
| 5 | | 정 해 천 | 탁 구 | 사무처장 | |
| 6 | | 조 용 구 | 배 구 | 사무처장 | |
| 7 | | 현 문 식 | 조 정 | 사무처장 | |
| 8 | 사무총장 | 이 성 진 | 철 인 3 종 | 사무처장 직무대행 | |
| 9 | 이 사 (22) | 강 동 영 | 유 도 | 사무처장 | |
| 10 | | 권 상 수 | 산 악 | 사무처장 | |
| 11 | | 김 술 현 | 역 도 | 사무처장 | |
| 12 | | 김 태 주 | 소프트테니스 | 사무처장 | |
| 13 | | 나 근 주 | 당 구 | 사무처장 | |
| 14 | | 문 성 온 | 농 구 | 사무처장 | |
| 15 | | 박 신 흠 | 하 키 | 사무처장 | |
| 16 | | 박 영 진 | 우 슈 | 사무처장 | |
| 17 | | 박 철 성 | 바이애슬론 | 사무처장 | |
| 18 | 이 사 (22) | 박 태 웅 | 빙 상 | 사무처장 | |
| 19 | | 양 구 석 | 체 조 | 사무처장 | |
| 20 | | 오 주 옥 | 보 디 빌 딩 | 사무국장 | |
| 21 | | 윤 상 준 | 요 트 | 차 장 | |
| 22 | | 유 경 민 | 바 둑 | 사무처장 | |
| 23 | | 이 강 민 | 봅 슬 레 이 | 사무처장 | |
| 24 | | 이 경 영 | 루 지 | 사무처장 | |
| 25 | | 이 경 호 | 파 크 골 프 | 사무처장 | |
| 26 | | 이 용 재 | 사 격 | 사무처장 | |
| 27 | | 장 승 종 | 태 권 도 | 차 장 | |
| 28 | | 최 용 문 | 합 기 도 | 사무처장 | |
| 29 | | 최 인 수 | 스 쿼 시 | 사무처장 | |
| 30 | | 함 세 희 | 수 중 | 사무처장 | |
| 31 | 감 사(2) | 장 태 황 | 검 도 | 사무처장 | |
| 32 | | 이 새 롬 | 우 슈 과 | 장 | |
| 33 | 명예회장 | 정 동 국 | 진천선수촌 | 부 촌 장 | |
| 34 | 자문위원(2) | 류 호 윤 | 태 권 도 | 前사무처장 | |
| 35 | | 전 영 석 | 수 상 스 키 | 사무처장 | |
| 36 | | | | | |
| 37 | | | | | |

## 4 이사회 현장 사진

2022년도 제 1차 정기경산이사회

2022년도 제 1차 정기경산이사회

2022년도 제 1차 정기경산이사회

2022년도 제 1차 정기경산이사회